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 도 액
계		259,549,540	7,786,486
1. 일 반 회 계		249,667,276	7,490,018
2. 특 별 회 계		9,882,264	296,468
	의 료 보 호 기 금	690,599	20,718
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1,545,364	46,361
	주 차 장	5,288,630	158,659
	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	168,027	5,041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622,381	18,671
	기 반 시 설 사 업	699,042	20,971
	지 하 수 관 리	603,900	18,117
	재 정 비 촉 진	264,321	7,930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음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471,421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8조 : 금회 추경 후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추가로 내시되는 국·시비 보조금(구비부담금 포함),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금, 조정교부금,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등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, 이를 서면으로 의회 보고한다.